

기업 지배구조헌장

Version 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SK바이오사이언스

목 차

전문	4
제1장 (주주)	5
제1조 (주주의 권리)	5
제2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5
제3조 (주주의 책임)	5
제2장 (이사회)	6
제4조 (이사의 기능)	6
제5조 (이사의 구성 및 이사 선임)	6
제6조 (사외이사)	7
제7조 (이사의 운영)	7
제8조 (이사회 내 위원회)	8
제9조 (이사의 의무)	8
제10조 (이사의 책임)	8
제11조 (평가 및 보상)	9
제3장 (감사기구)	9
제12조 (감사위원회)	9
제13조 (외부감사인)	10
제4장 (이해관계자)	10
제14조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11
제15조 (윤리경영)	11
제5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11
제16조 (공시)	11
제17조 (기업 경영권 시장)	12

전 문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영구히 존속·발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고객, 구성원, 주주에대한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주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회사의 가치를 높여 나가며,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이해관계자 간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현재와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러한 경영철학의 현실화를 위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다. 이에 회사는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 지배구조헌장”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더욱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제1장 주주

제1조 (주주의 권리)

- ① 주주는 주주권에 기반하여 주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관련 정보를 충분한기간 전에 제공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 ④ 주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제2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 ① 주주는 보통주 1 주마다 1 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주주는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회사는 공시 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주주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3조 (주주의 책임)

-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2장 이사회

제4조 (이사회의 기능)

- ①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중요이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회사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 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원활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가 운영되기에 충분한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②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는 특정 성별, 연령, 종교, 국적, 인종, 장애여부, 교육수준 등의 요소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 ④ 이사회는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이사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 ⑤ 회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사외이사)

- ① 사외이사는 회사와 일정 수준 이상의 계약·거래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 전문성, 충실성(Commitment), 경영마인드, 독립성, 사회적 지명도, 청렴도, 다양성 등의 선정기준을 고려한다.
- ③ 사외이사는 필요시 회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외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 ④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제7조 (이사회의 운영)

- 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둔다.
- ③ 회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유지·보관한다.
- ④ 회사는 개별 이사의 출석률과 주요 공시 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이사의 찬반여부 등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 ⑤ 이사는 필요 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이사회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급적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③ 각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다.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하고,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
- ③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이사의 책임)

- 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 ②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11조 (평가 및 보상)

- ① 이사회는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한다.
-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지정한 위원회는 매년 이사회 및 이사의 활동을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차기연도의 이사회 운영의 개선과 보상에 활용한다.
- ③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제3장 감사기구

제12조 (감사위원회)

- ①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이어야 한다. 또한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와 경영진의업무 진행에 대한 적법성 검사, 회사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검사, 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과 주주총회에서의 사후보고 등을 수행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회사의 비용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임원 또는 외부감사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로서의 보수만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제13조 (외부감사인)

- ①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임하며, 회사로부터 법적, 실질적독립성을 보장받는다.
- ②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질문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정기적으로 공시되는정보 중에서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시 회사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존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이해관계자

제14조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 ①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며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제고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노력한다.
- ③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촉진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 ④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 등의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한다.
- ⑤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각각의 권리는 보호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 (윤리경영)

- ① 회사는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게시한다.
- ②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 발전에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윤리규범을 모든 경영활동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제5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제16조 (공시)

- ①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을 신속하게 공시한다. 또한법적 요구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공시한다.
- ② 회사는 정기공시 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관계 법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적시에 정확하게 공시한다.
- ③ 회사는 공시 내용을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고 이해하기 쉽게작성하도록 노력한다.
- ④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고,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내부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춘다.
- ⑤ 회사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현황을 구체적으로공시한다.
- ⑥ 회사의 대표이사과 공시책임자는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인증하여야 한다.

제17조 (기업 경영권 시장)

- ① 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
- ② 회사의 경영권 방어 행위는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2021년 3월 31일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헌장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1년 3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